

가정통인문

http://www.jinan.hs.kr **75** 070-4619-0235

(보건부)

2023 - 105호

제 목 :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

22.1.30.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 발표에 따라 학교에서의 적용사 항을 안내드립니다. 학생들이 마스크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교육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.

【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1

- (적용 시점) 2023. 1. 30.(월)
- (조정)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⇒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
- (※착용 의무 유지) 학교 통학, 학원 이용, 행사·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
- (착용 권고)

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(학교・학원 적용)

- ① 코로나19 **의심 증상***이 있거나, 코로나19 **고위험군****인 경우
 - * 이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 **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-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(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 어려운 경우) 되어 있는 경우 ※ 현장 체험학습, 수학여행 등 포함

《사례별 권고 기준》

- 1. 교실,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
- 2.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(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 우)에서 **응원 함성·대화** 등으로 인한 비**말 생성 행위**가 많은 경우
- 3.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·졸업식 등에서 **교가·애국가** 등을 **합창**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(학교장 등)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

2023. 2. 6.

진 안 공 업 고 등 학 교 장

